

협회 가입 계약서

사단법인 한국안무협회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_____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(은) 다음과 같이 가입 계약서를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계약의 목적은 “갑”과 “을”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상호 협조하여, 한국안무가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진술 및 보증)

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아래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한 것임을 보증한다.
본 계약의 대상인 한국안무협회 회원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은 서로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간 협조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3조(권리와 의무)

- “을”은 “갑”과 합의한 내용과 일정에 따라 추후 안무창작물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.
- “갑”은 “을”의 권리 등의 이용에 대한 대리중개 업무를 추후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“갑”은 “을”이 제공한 창작물 등을 사용한 위탁업무를 할 때에 “을”에게 추후 창작물 및 계약서 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- “갑”은 “을”의 권리 등을 이용하여 취득된 대가는 추후 계약서에 맞춰, “을”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.

제4조(비밀유지 및 중목 의뢰 금지)

“갑”은 본 계약의 대리중개과정에서 알게 된 “을”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제 3자에게 알리거나 유출해서는 아니되며, “을”은 창작물에 대한 권한을 제 3자에게 위탁 의뢰하지 아니 한다.

제5조(탈퇴 및 해지 사유)

- “갑”에게 통보 없이 “을”이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“을”은 탈퇴 및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.
- “을”이 사회 통념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“갑”으로 부터 탈퇴 및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.
- “갑”이 “을”의 창작물을 비방 및 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.

제6조(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)

-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평생으로 한다.
- 본 계약은 계약 종료 6개월 이전 서면 또는 구두로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제7조(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)

본 계약은 당사자 간 서명날인 후 “을”이 가입비 100,000원을 협회 계좌
(하나은행 - 199-910018-37704 예금주 : 사단법인 한국안무협회)로 입금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이상의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 년 월 일

“갑” (협 회)

“을” (회 원)

주 소 :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42길 2

주 소 :

등 록 번 호 : 106-82-16859

생 년 월 일 :

단 체 명 : 사 단 법 인 한국안무협회 印

성 명 :

印